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528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김태선·김남근·정준호

맹성규 · 권칠승 · 윤종군

장철민 • 윤준병 • 이훈기

이학영 · 강유정 · 이용우

박홍배・김태년・박 정

안호영·김주영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등과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 중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 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	
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	
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조치	
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	금품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	로 인하여
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u>같다)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	
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③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u>「고용</u> 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른 업 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

-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고용 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 는 경우
-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